

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
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
2 0 2 3 . 8 . 3 0 . (수)

「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
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309
제출일자 : 2023. 8. 17.
회부일자 : 2023. 8. 22.



문 화 환 경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성태

「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-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 명칭이 ‘맑은누리파크’로 변경됨에 따라 「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명칭 변경
-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경북북부권 ‘11’ 개 시·군을 ‘10’ 개 시·군으로 변경

3. 주요내용

- 가.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을 ‘맑은누리파크’로 변경
(안 제1조,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)
- 나. 반입수수료의 기준을 경상북도와 경북북부권 ‘11’ 개 시·군의 실시협약으로 정한 금액에서 경상북도와 경북북부권 ‘10’ 개 시·군의 실시협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변경(안 제4조제1항제2호)

4. 관련법령

- 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

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,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.

5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가. 규제개혁 심사(법무혁신담당관실) : 해당하지 않음

나. 부패영향평가(감사관실) : 부패 유발요인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(여성아동정책관실) : 평가 제외 대상

라. 예산 수반사항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 : 불임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의 명칭이 공모를 통해 ‘맑은누리파크’로 공식 사용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례 내용에서 명시한 명칭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나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, 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4조제1항에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을 ‘맑은누리파크’로 개정하고, 군위군의 관할구역 제외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‘11개’ 시·군에서 군위군을 제외한 ‘10개’ 시·군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- 이 밖에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명칭 개정에 따른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와 반입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,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인 「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서 명시한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의 명칭을 ‘맑은누리파크’로 개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의 명칭을 ‘맑은누리파크’로 공식 사용함에 따라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여 명칭의 사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